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사업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근거 신설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반영〉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3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가하고(안 제1조),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¹⁾을 작성할 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라 함) 제45조²⁾에 따라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6조제6항 신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한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6항제5호의2).

본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0)과 연계되는 법률안임.

해당 연계 법률안은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그 근거 조문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 1)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발전과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 형발전을----- -----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에 「분산에 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 에 따라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략)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5의2. <u>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 한 사항</u>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분산에너지 활성화 특 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 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u>

현행	개정안
	한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 기반 마련 및 분산형전원의-----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안 제25조제6항제5호의2는 이 법 시행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서로 다른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전력 자급률³⁾은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경북(251.8%), 전남(215.0%), 충남(209.3%)은 소비량의 두 배를 상회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전(3.0%), 서울(6.8%), 광주(10.8%)는 소비량의 10% 안팎을 자체 생산하고 있음.

[2025년 시·도별 발전량·전력소비량 및 전력 자급률]

(단위: GWh, %)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대전	315	10,349	3.0	세종	4,899	4,299	114.0
서울	3,488	51,138	6.8	울산	34,207	30,099	113.6
광주	1,008	9,338	10.8	부산	27,086	22,100	122.6
대구	3,945	16,726	23.6	경남	50,105	36,570	137.0

3) 전력 자급률: 해당 지역의 발전량을 그 지역의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비율.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통상 발전량 대비 소비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충북	6,737	26,913	25.0	인천	45,493	26,345	172.7
경기	85,963	145,316	59.2	강원	28,841	16,427	175.6
전북	15,500	21,725	71.3	충남	104,455	49,906	209.3
제주	4,576	6,230	73.5	전남	71,765	33,380	215.0
전국	595,526	549,418	108.4	경북	107,143	42,557	251.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자급률 산출

이와 같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분리는 장거리 송전설비의 확충 필요성과 송전 과정의 손실을 수반하며, 발전설비 및 송전선로 입지를 둘러싼 지역 수용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력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분산형전원⁴⁾의 비중이 확대되어 왔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분산형전원의 발전량은 2019년 71.6TWh에서 2023년 115.5TWh로 증가하였고,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9%에서 18.1%로 확대되었음.

[분산형전원 발전량 및 발전비중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전량(TWh)	71.6	88.6	102.6	104.6	115.5
발전비중(%)	11.9	14.9	16.4	16.3	18.1

주) 분산형전원 발전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발전량으로서,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설비, 40MW 이하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가용 발전설비(설비용량 제한 없음)에서 생산한 전력을 말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4)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⁵⁾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요금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⁶⁾는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을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은 제8장에 “지역별 전기요금 등”을 두고 있으나 법 제45조에 따른 요금 산정에 관하여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즉 지역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현행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요금제와 관련한 전문가 연구용역이 2026년 8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개정안은 이와 같이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전력 분야 일반법인 「전기사업법」에도 명시하고, 국가 전력 수급의 기본 틀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 기반 마련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가 계통 부담과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의 근거를 전력 분야 기본법에 함께 두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일한 사항을 두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법률 간 관계, 목적 조항의 개정이 「전기사업법」 전반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간의 관계 및 개정 문언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역별 전기요금이 두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는 데 따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제6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분산에너지법 제45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4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이 법을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두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시하고 있음.⁷⁾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현행 분산에너지법 제45조를 통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 작성 시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약관에 관한 조항에는 전기요금과 공급조건만을 열거하는 것이 법령의 간결성과 명확성 유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한국전력공사는 현행법상으로도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제16조제6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연계 법률안(의안번호 2219140)은 분산에너지법 제45조의 근거조문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로 변경하고

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있어, 두 법률안이 함께 의결될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제6항은 분산에너지법 제45조를, 분산에너지법 제45조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6항을 각각 인용하는 구조가 되는데, 두 조문이 규정하는 고려요소가 서로 달라지게 됨.

안 제16조제6항은 “송전·배전 비용 등”으로, 연계 법률안의 분산 에너지법 제45조는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 에너지 사용률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두 법률안 의결 시 조문 인용 및 고려요소 비교]

구분	「전기사업법」 제16조제6항(신설)	「분산에너지법」 제45조(개정)
인용 조문	「분산에너지법」 제45조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
요금 산정의 목적	(명시 없음)	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촉진 등
고려요소	송전·배전 비용 등	송전·배전 비용 및 거리, 전력 자급률 및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

따라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전기사업법」에도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 적용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두 조문 중 어느 쪽이 요금 산정의 기본 근거가 되는지, 고려요소를 어느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 상호 인용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목적 조항 개정이 「전기사업법」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조는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있음.

아울러 분산에너지법 제45조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이 전기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제도의 목적은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균형발전은 분산에너지법의 지역별 전기요금 규정을 통하여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 제1조는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전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지역 요소를 요금에 반영하는 경우 기존 요금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제6항은 기본공급약관⁸⁾ 작성 시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같은 항 제1호는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을, 제2호는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을 각각 인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인가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⁹⁾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15조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체계를 두고 있으며¹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는 그 인가기준으로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을 정하고 있음.¹¹⁾

즉 송전·배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5조에 따른 이용요금 체계에서도 반영되는 요소에 해당함.

9)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전기사업법」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또한 전력 자급률¹²⁾을 요금 산정에 반영하는 경우의 지역별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기준 전력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는 서울·경기 외에 대전(3.0%), 광주(10.8%), 대구(23.6%), 충북(25.0%) 등 비수도권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지역이 요금 구분의 기준에 추가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과 송전·배전 이용요금 체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때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정할 경우 지역별·용도별 전기요금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한편 지역별 요금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지역에 따라 전력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는 주로 전력 도매시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마다 가격을 달리 정하는 방식¹³⁾으로 운영한 영국의 사례가 있음.

12) 전력 자급률: 해당 지역의 발전량을 그 지역의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비율.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통상 발전량 대비 소비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13)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구역제: 하나로 운영되던 전력 도매시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마다 전력의 거래가격을 다르게 결정하는 방식. 구역과 구역 사이의 송전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영국의 경우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가 2022년부터 전력시장 개편 검토를 통하여 도매시장을 여러 개의 가격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25년 7월 전국에 하나의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방안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¹⁴⁾

그 사유로는 제도가 복잡해지는 점, 발전설비를 어디에 지을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가격 신호가 불확실해지는 점, 지역 간 부담의 배분에 관한 문제, 도입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이 제시되었음.

다만 위 사례는 발전사업자와 전력 구매자 사이의 도매 거래가격을 정하는 구조에 관한 것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소매요금의 산정에 관한 개정안과는 적용되는 거래 단계가 다르다는 점¹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두 계획 간의 관계 및 개정 문언의 명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25조제6항제5호의2는 전력수급기본계획¹⁶⁾의 포함사항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14) 영국 전력시장 개편 검토(REMA, Review of Electricity Market Arrangements):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논의를 말함.

*출처: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의 2025. 7. 10. 발표자료.

15) 전력의 도매거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을 사들이는 자 사이의 거래를, 소매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각각 말함. 개정안은 이 중 소매요금에 관한 것임.

16)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로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전기사업법」 제25조).

계획¹⁷⁾을 고려한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 기반 마련 및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는 두 계획 사이의 상하 관계나 수립 순서를 직접 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분산에너지법 제4조¹⁸⁾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같은 법률 「전기사업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 전망, 발전설비 및 전원 구성, 전력계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는 계획인 점을 들어, 계획 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

17)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